

Muan Web Contents

2023년 03월 21일 16시 11분



목차

목차	2
난임부부 지원사업	3
신청자격	3
지원횟수	3
지원금액	3
선정기준	3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신청	4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아동학대신고센터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생아양육지원금 지급안내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신청자격

- 법적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이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횟수

- 총21회(신선배아9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단위 : 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가구원수	13,011,000 소득기준	476,87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81,214	521,613
7인	14,594,000	작형가입자	지역가입자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 추가 제출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꼭 시술 필요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지원신청

- 보건소,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신청

MUAN

Web Contents

 무안군